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4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에 의하여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우체국과 취급조건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우정사업본부장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우체국과 취급조건 고시

1. 취급 조건

가. 서비스 종류

1) 1종 : 우체국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한 후 우체국의 팩시밀리로 수신하여 원형을 재생시켜 수취인에게 창구에서 바로 교부하는 서비스

2) 2종 : 우체국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수취인의 팩시밀리로 직접 전송하는 서비스

3) 3종 : 우체국 팩시밀리 이외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한 후 우체국 팩시밀리로 수신하여 원형을 재생시켜 수취인에게 창구에서 바로 교부하는 서비스

나. 통신문 용지의 크기 : A4용지(210×297㎜)에 통신내용을 기록, 인쇄한 것으로 한다.

2. 취급우체국

가. 우체국 : 전국우체국 (단, 군부대에 소재하는 우체국은 아래 지역만 취급 가능)

지역명	취급 가능한 군부대 소재 우체국명
서울	22, 77, 138
경기	14, 86, 91, 92, 94, 95, 103, 105, 106, 109, 110, 111, 117, 118, 122, 130, 132, 309, 337, 601, 800, 867, 900
인천	317, 603, 803
부산	80, 88, 211, 306, 307, 321, 336, 602, 605
대전	120, 78
대구	79, 96, 134, 304, 503
충청	76, 82, 90, 119, 308, 335, 383, 384, 501
전남	8, 75, 85, 305
경북	209, 322
전북	89
강원	31, 71, 73, 81, 87, 93, 97, 99, 100, 101, 104, 107, 108, 114, 116, 123, 133, 323, 334, 502, 604

나. 우편취급국(종전 우편취급소) : 취급하지 않음

3. 시행일 : 2010. 12. 1.

부칙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8-13호(2008. 4. 3)는 폐지한다.